2015년도 이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11. 23.~ 11. 27.(5일간)

○ 감사분야 : 2013년 3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 분 계 획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총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시정	주의	권고	징계	훈계	주의	회수	과태료
14건	14건	12건(44명)	1,000	2	11	1	-	8	36	-	1,000

Ⅱ 주요 지적사항

○ (인사·행정) 전문능력성적 평정 부적정

- 소방교~소방위의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응급구조사(2급), **화재진화사(1급, 現 화재대응능력 1급)**, 인명구조사(2급), 위험물기능사(또는 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정비기사), 컴퓨터 활용능력(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등은 각 자격증별로 **전문능력성적 3점**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 소속 직원 소방장 A가 **화재대응능력(1급)을** 취득하여 정기평정 시 전문능력성적 3점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자격증 가점으로 적용하여 0.30점**으로 평정하여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2.70점을 감점**하여 평정하는 결과를 초래함.

❖【관련규정】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

○ (예산·회계) 시설공사 준공검사 등 업무처리 미흡

- **(보험료 정산 미흡)** 발주자는 준공대가 지급전에 건설업자가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그대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산 절차 없이 건설업자가 요구한 준공대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함.

- **(예산집행품의 전결 규정 준수 소홀)** 소방서장은 추정금액 5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속의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금액 14,561천원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방행정과장이 전결 처리함.

❖【관련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21조

○ (예방·민원)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부적정

-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피난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없이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2014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A 휴게음식점은 최소 2013.8월부터 피난부속실을 티 테이블을 비치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2014.8.1. 이후에도 타 용도로 계속 사용, 감사일 현재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내부구조를 변경하였으며, 비상구 부속실을 흡연실로 사용 중임.

❖【관련규정】다중이용업소법 제21조, 시행령 제19조

○ (재난대응·안전)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서식이 **2010.3.30.자로 변경**되어, 주민번호 기재 란이 생년월일로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도 민원인의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적시하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증명 자료와 **무관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방화관리자 수첩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징구함.

❖【관련규정】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수범사례	안전사고 예방 물품 제작 활용

□ 추진 개요

○ 현장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경각심 고취

○ 출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자체개발 보급

❖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천소방서)

연도별	계	화재진압	구조·구급	교육·훈련	소방지원	체력단련	교통사고
계	17	4	10			1	2
2012	6		5				1
2013	5	1	3				1
2014	3	1	1			1	
2015(10월)	3	2	1				

□ 추진사항

○ 소방차량별 위험지역 안내 "**칼라 콘**" 비치 : 150개(차량별 5개)

○ 방화모 측면 "**안전문구**" 부착(전직원) : "**안전=생명**"

○ 소방차량 "**야광 고임목**" 설치 : 140개(차량별 4개)

○ 차량 "**후방거울**" 설치 : 전 차량

○ 소방차량 후면 출동대 "**야광 표시**" : 전 차량



칼라콘


안전문구


야광 고임목


후방 거울



출동대 표시

□ 기대 효과

○ 사전 위험성 전파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안전의식 함양